
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3431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1.

제출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하는 발명 활동의 촉진 대상 및 특허관리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.
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호 중 “학생·여성”을 “학생, 학교 밖 청소년(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여성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학생”을 “학생, 학교 밖 청소년”으로 한다.

제55조제3항제7호 중 “학생”을 “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)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1. (생략) 2. <u>학생·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</u> 3. ~ 7. (생략)	제6조(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학생, 학교 밖 청소년(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여성</u> ----- 3. ~ 7. (현행과 같음)
제27조(특허관리 비용의 지원) ① (생략) ②지식재산처장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<u>학생</u> 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.	제27조(특허관리 비용의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학생, 학교 밖 청소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제55조(기금의 조성 등) ①·② (생략)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 1. ~ 6. (생략) 7. <u>학생</u> 발명의 장려 8. ~ 12. (생략)	제55조(기금의 조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</u> --- ----- 8. ~ 12. (현행과 같음)
--	---